##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12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연희·정준호·김남희

김정호 · 최기상 · 복기왕

허종식 • 정성호 • 윤종군

김윤덕 · 문진석 · 황 희

박홍배 • 문금주 • 박상혁

이춘석 • 한민수 • 민형배

이정문 · 이광희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 그램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 • 교육 • 지원 또는 보호가 필

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나. 입주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 다.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다)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 독자 등 상담·교육·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 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 바.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	2. <u>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u>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	
원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u>&lt;신 설&gt;</u>	나. 입주자를 위한 사회적 일
	<u>자리</u>
<u>&lt;신 설&gt;</u>	다.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
	한 프로그램(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을 포함한다)
<u>&lt;신 설&gt;</u>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상담ㆍ
	교육ㆍ지원이 필요한 입주
	<u>자를 위한 프로그램</u>
<u>&lt;신 설&gt;</u>	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를 위한 돌봄서비스
<u>&lt;신 설&gt;</u>	바.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